

# 建築士法中 改正建議(案)

## 提 案 理 由

建築士의 資格을 国家技術資格法의 규정에 의한 技術士의 資格과의 均衡을 확보함과 同時に 建築士 制度의 發展을 위하여 複完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主要骨子

- 가. 建築士의 等級(1, 2級) 制度를 廃止함(第3條)
- 나.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의 限界를 現行 1級 및 2級의 業務와 같이 함.(第4條)
- 다. 建築士에 대한 制裁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聽問하도록 함.(第11條 第3項)
- 라.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때, 補修教育을 命할 수 있게 함(第12條의 2)
- 마. 建築士資格試驗에 필요한 實務經歷을 종전 1급建築士의 경우보다 각각 2年씩 延長, 上向調整함(第14條)
- 바. 建築士는 他人에게 고용되어 業務行為를 할 수 없고, 또한 建設業 · 建築資材業 등과 兼業할 수 없게 함(第22條의 2)
- 사. 建築士의 業務行為에 관한 不備한 規定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大統領令에 委任함(第22條의 3)
- 아. 建築士協會任員中 理事定員(5人)을 9人으로 增員함.(第34條 第1項)
- 자. 종전의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의 業務는 이法에 의한 建築士 免許를 취득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게 함(附則 ②)
- 차. 종전의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에 대하여는 時限附로 建築士免許를 할 수 있는 特例를 둠(附則 ③ 및 ④)
- 카. 종전의 規定에 의한 1級建築士資格試驗應試 有資格者에 대하여는 時根附로 이 法에 의한 建築士 資格試驗에 應試할 수 있게 經過規定을 둠(附則 ⑤)

## 建築士法中 改正建議(案)

建築士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削除한다.

第4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①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建築物을 新築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 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造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이 3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
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한 建築物(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建築物에 限한다.)
3. 層數가 3層以上인 建築物

第4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建築物을 增築 · 改築 또는 大修繕이나 重要變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增築 · 改築 또는 大修繕이나 重要變更를 하는 部分을 新築하는 것으로 着做하고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5條를 削制한다.

第6條를 削制한다.

第11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建築士에 대하여 聽問을 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建築士協會 또는 利害關係人의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해 建築士가 正當한 事由敘이 聽問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聽問을 하지 아니하고相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

第12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1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 2(補修教育) 建設部長官은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补修教育을 命할 수 있다.

第14條 各号中 “1級建築士”를 “建築士”로 “5”年을 “7”年으로 “7”年을 “9”年 ”으로, “10”年을 “12”年으로, “17”年을 “19”年 ”으로 한다.

第14條 第4号를削除하고, 同條 第5号를 第4号로 한다.

第15條를 削除한다.

第21條中 “1級建築士 또는 2級建築士”를 “建築士”로 한다.

第22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 2(業務行為의 制限) ① 建築士는 他人(自然人 및法人)에게 고용되어 建築士의 業務行為를 하지 못한다. 다만 国家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体의 公務員 또는 任職員으로서 建築士인 者가 당해 所屬機關의 業務로서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建設業·建築資材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과 兼業하는 建築士의 業務行為는 할 수 없다.

第22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 3(業務規定의 委任) 建築士의 業務行為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条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地方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処分을 할 때에는 第11条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4条 第1項中 “5人”을 “9人”으로 한다.

第39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9条(罰則)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3万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1. 詐偽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은 者.
2.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한者.
3. 第10条의 規定에 違反하여 他人에게 免許証을 貸與한 者.
4. 詐偽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第23条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받은 者.
5. 第25条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 받지 아니하고 業으로서 建築士의 業務行為를 한 者.
6. 第28条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閉鎖命令에 違反한 者.

第41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1条(同前)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0원 이하의 過態料에 処한다.

1. 第8条 第3項·第11条第2項 또는 第27条 第1項(登錄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12条의 2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을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 후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종전 建築士의 業務의 계속) 이 法 施行 당시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免許를 받을 때까지 法律 第1536号에 의한 당해 建築士의 業務를 계속할 수 있다.

③(建築士免許의 特例)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期間에 第14條의 規定에 대하여 그 實務經驗 또는 研究 經歷에 관한 銓衡을 거쳐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法 施行日로부터 6年에 한하여 建築士의 免許를 할 수 있다.

④(同前) 이 法 施行日로부터 5年 期間에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實務經驗 또는 研究 經歷을 가진 2급建築士에 대하여 그 實務經驗 또는 研究 經歷에 관한 銓衡과 一部科目試驗을 거쳐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9年에 限하여 建築士의 免許를 할 수 있다.

⑤(建築士試驗応試資格의 特例)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期間에 法律 第1536号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1級建築士資格試驗 応試資格이 있는 者는 第14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에 応試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

## 新 旧 对 比 表

現 行	改 正 建 議(案)
<p>第3條(建築士의 等級) 建築士는 1級建築士와 2級建築士로 한다.</p> <p>第4條(1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①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建築物을 新築을 하는 경우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1級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学校・病院・劇場・映画館・演芸場・観覧場・公会堂・集会場(觀覽席 또는 聽衆席이 없는것을 제외한다). 또는 百貨店의 用途에 供하는 建築物로서 延面積이 50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li> <li>2.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石造・煉瓦造・콘크리트부록크조・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 300平方미터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 높이 9m를 초과하는 것.</li> <li>3. 延面積이 1,000平方미터를 초과하고 그 層數가 2層이상인 建築物</li> </ol> <p>② (省略) (新設)</p>	<p>削除</p> <p>第4條(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①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建築物을 新築 하는 경우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鐵筋콘크리트造, 鐵骨造, 石造, 煉瓦造, 콘크리트부록크조 또는 無筋콘크리트造의 建築物이나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이 3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li> <li>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한 建築物(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建築物에 限한다.)</li> <li>3. 層數가 3層以上인 建築物</li> </ol> <p>② 左同 ③ 建築物을 增築・改築 또는 大修繕이나 重要變更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增築・改築 또는 大修繕이나 重要변경을 하는 部分을 新築하는 것으로 着做하고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p>
<p>第5條(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는 設計 또는 工事監理) 前條 各号에 揭記한 建築物이외의 建築物로서 다음 각号에 揭記하는 것을 新築을 하는 경우에는 그 設計 또는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前條 第2号에 揭記한 構造의 建築物 또는 建築物의 部分으로서 延面積이 30平方미터를 초과하는 것.</li> <li>2. 延面積이 100平方미터를 초과한 建築物(建築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要하는 建築物에 한한다.)</li> <li>3. 層數가 3層이상인 建築物.</li> </ol>	<p>第5條 (削除)</p>
第2章 免 許	第2章 免 許
<p>第6條(業務限界) 建築物을 增築・改築 또는 大修繕이나 重要變便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增築・改築・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하는 部分을 新築하는 것으로 着做하고 前2條의 規定을 適用한다.</p>	<p>第6條 (削除)</p>

現 行	改 正 建 議 (案)
第11條(免許의 取消) <p>① (省略) ② (省略) (新 設)</p>	第11條(免許의 取消) <p>① (左同) ② (左同) ③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 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建築士에 대하여 聽問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建築士協會 또는 利 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해 建 築士가 正當한 事由 없이 聽問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聽問을 하지 아니하고相當한 處分을 할 수 있다.</p>
第12條(類似名稱의 사용금지) ① (省略) ② 2級建 ② 2級建築士는 1級建築士 또는 이와 類似한 名 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新 設)	第12條(類似名稱의 사용금지) ① (左 同) ② (削除)
第14條(1級建築士資格試験의 応試資格) 다음 각号 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1級建築士의 資 格試験에 応試할 수 없다. 1. 教育法에 의한 大学(旧制 専門学校 포함) 에 서 建築에 관한 所定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한 者 로서 5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実務 또는 研究 경歴을 가진 者. 2. 教育法에 의한 初級大学에서 建築에 관한 所 定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以 上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7年以上的 建築에 관한 実務經驗을 가진 者 3. 教育法에 의한 高等学校에서 建築에 관한 所 定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 상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10年 이상 의 建築에 관한 実務經驗을 가진 者 4. 2級建築士로서 3年이상의 実務經驗을 가진 者 5.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하여 17年에 상의 実務經驗을 가진 者 第15條(2級建築士資格試験의 応試資格)..... (省略)	第12條의 2 (補修教育) 建設部長官은 建築士의 資質 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教育를 命할 수 있다. 第14條(建築士資格試験의 応試資格) 다음 각号의 1 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建築士의 資格試験에 応 試할 수 없다. 1. 教育法에 의한 大学(旧制専門学校 포함)에서 建 築에 관한 所定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 와 同等이상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7년 이상의 建築에 관한 実務 또는 研究経歴을 가진 者. 2. 教育法에 의한 初級大学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 課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 이상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9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実務經驗을 가진 者. 3. 教育法에 의한 高等学校에서 建築에 관한 所定 過程을 履修하고 卒業한 者 및 이와 同等이상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12年이상의 建築에 관한 実務經驗을 가진 者 4.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에 관하여 19年 이상 의 実務 経験을 가진 者.  第 15條 (削除)
第21條(表示行為) 建築士는 建築物에 관한 設計를 한 때에는 그 設計圖書에 1級建築士인 表示를 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一部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1條(表示行為) 建築士는 建築物에 관한 設計를 한 때에는 그 設計圖書에 建築士인 表示를 하고,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一部를 變更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現 行	改 正 建 議 (案)
(新 設)	<p>第22條의 2 (業務行為의 制限) ① 建築士는 他人(自然人 및法人)에게 雇傭되어 建築士의 業務行為를 하지 못한다. 다만, 國家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의 公務員 또는 任職員으로서 建築士인 者가 당해 所屬機關의 業務로서 행하는 것은 그려하지 아니하다.</p> <p>② 建設業・建築資材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과 兼業하는 建築士의 業務行為는 할 수 없다.</p>
(新 設)	<p>第22條의 3 (業務規定의 委任) 建築士의 業務行為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第28條(登録의 取消 또는 建築士事務所의 閉鎖)	<p>第28條(登録의 取消 또는 建築士事務所의 閉鎖)</p> <p>① (省略)</p> <p>② (省略)</p>
(新 設)	<p>③ 地方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 때에는 第11條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第34條(任員) ① 建築士協會의 任員으로서 會長 1人, 理事 5人과 監事 2人을 둔다.	<p>第34條(任員) ① 建築士協會의 任員으로서 會長 1人 理事 9人과 監事 2人을 둔다.</p>
② (省 略)	<p>② (左同)</p>
③ (省略)	<p>③ (左同)</p>
第 7 章 罰    則	第 7 章 罰    則
第39條(罰則)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3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p>第39條(罰則)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이나 3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1. (省略)	1. (左同)
2.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한 者.	2.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한 者.
3. (省略)	3. (左同)
4. (省略)	4. (左同)
5. (省略)	5. (左同)
6. (省略)	6. (左同)
第41條(同前) 第8條 第3項・第11條 第2項 또는 第27條 第1項(登録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000원이하의 遇怠料에 處한다.	<p>第41條(同前)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0원 이하의 遇怠料에 處한다.</p>
	1. 第8條 第3項, 第11條 第2項 또는 第27條 第1項(登録事項의 變更申告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12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을 拒否·妨害하거나 忌避한 者.
	附    則
	<p>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 (종전建築士의 業務의 계속) 이 法 施行當時 1級建築士 및 2級建築士는 이 法에 의한 建築士 免許를 받을때까지 法律 第 1536號에 의한 당해 建築士의 業務를 계속할 수 있다.</p>

現 行	改 正 建 議 (案)
	<p>③ (建築士免許의 特例)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年期間에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實務經驗 또는 研究經歷을 가진 1級建築士에 대하여 그 實務經驗 또는 研究經歷에 관한 銓衡을 거쳐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6年에 한하여 建築士의 免許를 할 수 있다.</p> <p>④ (同前) 이 法施行日로부터 5年期間에 第 14條의 规定에 의한 實務經驗 또는 研究經歷을 가진 2級建築士에 대하여 그 實務經驗 또는 研究經歷에 관한 銓衡과 一部科目試驗을 거쳐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資格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9年에 한하여 建築士의 免許를 할 수 있다.</p> <p>⑤ (建築士資格試驗 応試資格의 特例) 이 法施行日로부터 2年期間에 法律 第1536号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1級建築士資格試驗 応試資格이 있는 者는 第14條의 规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建築士資格試驗 応試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p>